

의안번호	제 31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9년 11월 8일

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13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11월 8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절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
-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명확화 및 결과보고회 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보완(안 제2조)
 - 타기관 요청 국외출장 확대 :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→ 충청북도·충청북도교육청 등 타 기관
 -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추가
-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규정 명확화(안 제9조)
 - 공무국외출장심사 예외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위원회 미제출 규정 추가
 - 출장실행계획서 제출 확대 : 제2조 제5호 → 제2조 제5호 및 제6호
-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 대상 확대(안 제10조)
 - 결과보고회 대상 확대 : 제2조 제5호 → 제2조 제5호 및 제6호

3. 규칙개정안 : 불임참조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참조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6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충청북도·충청북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
6.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

제9조제1항 단서 중 “제2조 제5호”를 “제4조 제7항의 경우는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5호 및 제6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제2조 제5호의”를 “2명 이상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5호 및 제6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9조(출장계획서 제출 등)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2조 제5호의 경우</u>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국 60일 전부터 수립한 사전활동계획이 포함된 출장실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충청북도·충청북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9조(출장계획서 제출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 <u>제4조 제7항의 경우는</u>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<u>제2조 제5호 및 제6호</u>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10조(출장보고서 제출 등) ① 공
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
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
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
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 다만, 제2조 제5호의 경
우 공동으로 국외출장보고서를
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
있다.

② (생략)

③ 의장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귀
국 후 9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
개최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0조(출장보고서 제출 등) ① -

----. ---- 2명 이상의 의원이
국외출장을 한 -----

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5호 및 제6호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